감점기준

아래의 감점기준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 제4호, 제24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.

- * 허가 없이 결석하거나 의무합숙 시 외박한 경우, 1일당 1주 이하에는 100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80점, 4주 이상 12주 미만 및 12주 이상에는 각 80점이 감점됩니다.
- * 허가 없이 희망합숙 시 외박한 경우, 1일당 1주 이하에는 20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15점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10점, 12주 이상에도 10점이 감점됩니다.
- * 원내 주류 반입 및 음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1회당 1주 이하부터 12주 이상까지 모두 70점이 감점되며,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.
- *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(예: 고성방가)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, 1회당 1주 이하에는 70점(최대 100점)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50점(최대 100점)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40점(최대 100점), 12주 이상에는 30점(최대 100점)이 감점됩니다.
- * 허가 없이 결강, 조퇴, 지참, 외출한 경우, 시간당 1주 이하에는 20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15점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10점, 12주 이상에도 10점이 감점됩니다. 단, 감점 합계가 무단결석 감점보다 높을 경우 무단결석 감점을 적용합니다.
- * 입교등록이 지연된 경우, 시간당 1주 이하부터 12주 이상까지 모두 30점이 감점되며, 이역시 무단결석보다 감점 합계가 높을 경우 무단결석 감점을 적용합니다.
- * 허가받은 결석이나 의무합숙 시 외박의 경우,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당 1주이하에는 28점(최대 42점)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21점(최대 31점)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14점(최대 21점), 12주 이상에는 10점(최대 15점)이 감점됩니다.
- * 허가받은 결강, 조퇴, 지참, 외출의 경우, 시간당 1주 이하에는 4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3점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2점, 12주 이상에는 1점이 감점됩니다.
- * 학습 및 시험 태도가 불량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50점이 감점됩니다.
- * 허위보고(예: 대리서명 등)를 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70점이 감점됩니다.
- * 각종 학습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, 1회당 1주 이하에는 10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6점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4점, 12주 이상에는 2점이 감점됩니다.
- * 교육자치회 활동에 무단불참한 경우, 1회당 1주 이하에는 10점, 2주 이상 4주 미만에는 6

- 점, 4주 이상 12주 미만에는 4점, 12주 이상에는 2점이 감점됩니다.
- * 숙소동 환경정리가 불량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3점이 감점됩니다.
- *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3점이 감점됩니다.
- * 당직실을 경유하지 않고 숙소동에 음식물을 반입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5점이 감점됩니다.
- * 교육원 재산을 훼손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30점이 감점됩니다.
- *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, 1회당 전 기간 공통으로 10점이 감점됩니다.

기타 적용사항

- * 감점 기준은 감점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, 그 중 높은 감점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* 감점기준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, 50% 범위 내에서 가중 감점이 가능하며, 제5호, 제6호, 제7호는 제외됩니다.
- *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며, 폭설 등 천재지변의 경우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* 희망합숙 중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자는 감점과 함께 숙소동 퇴실조치가 병행됩니다.